

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(3-5-4)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 2에 의한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06. 1. 25)(개정 18. 12. 6)

② 복수전공제는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흥미를 증진시켜 국가적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③ 연계전공은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학문적 추세를 반영하는 ‘맞춤형 전공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06. 1. 25)

제2조(자격) ① 본 대학교 학생 중 제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는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, 연계전공(제2전공)을 이수 할 수 있다.(개정 '04. 5. 27)(개정 '05. 2. 16)(개정 '06. 1. 25)

② 타 학부(과) 학생은 보건의료계열학과, 사범계열학과, 예·체능학부(과), 군사학과를 복수전공(제2전공)으로 이수할 수 없다(신설 '04. 5. 27)(개정 '05. 2. 16)(개정 '06. 1. 25)(개정 '15. 1. 1)

③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은 공고된 시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신청원을 소속학부(과)장, 복수전공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'04. 5. 27)(개정 '06. 1. 25)(개정 '15. 1. 1)

④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허가 여부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'97. 4. 23)(개정 '04. 5. 27)(개정 '06. 1. 25)

제3조(학점의 이수)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(과) 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'96. 3. 11)(개정 '06. 1. 25)(개정 2014. 4. 28)(개정 2016. 6. 30)

② 연계전공 이수자는 연계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관련과목은 연계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(개정 '97. 4. 23)(개정 '06. 1. 25)(개정 '16. 6. 30)

③ (삭제)(개정 '06. 1. 25)(삭제 '15. 1. 1)

④ 이수 도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은 자율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(개정 '06. 1. 25)

제4조(복수전공 변경) 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의 변경은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.(신설 '98. 3. 2)(개정 '06. 1. 25)(개정 18. 12. 6)

② 변경신청 기간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포기) 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의 포기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.

② 포기신청 기간은 매 학기말 공고된 기간으로 한다. 단, 9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.(개정 18. 12.. 6)

제6조(졸업유보) 제1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한 후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졸업을 유보한다.(개정 '06. 1. 25)(개정 18. 12.. 6)

제7조(학위이수)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면 학칙 제41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(개정 18. 12.. 6)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며,
2. (경과조치)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단,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 재입학,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의 적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종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해당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